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광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71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4.

발 의 자 : 이광재 · 복기왕 · 황 희
권향엽 · 김남준 · 박해철
민병덕 · 허 영 · 김태년
조승래 · 김남국 · 권철승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 정책 사업이지만 주택지구 내 주민들에게는 불가피하게 삶의 터전과 생업 기반을 상실하는 피해가 발생함.

한편 현행법은 주택지구 내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대책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개발 이후 주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소득원 확보 방안 등 생활안정 지원의 근거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지원대책의 범위에 생활안정 지원을 추가하고,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주택지구 내 주민의 재정착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7조의3).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직업전환훈련, 소득창출사업지원,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·시행할 수 있다”를 “재정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직업전환훈련 및 직업 알선
2.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고용 추천
3. 주택지구 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(이하 이 조에서 “주민생계조합”이라 한다)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
4. 주거시설 및 생활안정 지원

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책의 범위·대상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민생계조합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원대책 수립·시행에 관한 적용례)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7조의3(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·시행)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사업 또는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쪽방 밀집지역(이하 “쪽방 밀집지역”이라 한다)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<u>직업전환훈련, 소득창출사업지원,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</u>	제27조의3(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·시행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재정착에 <u>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
<신 설>	1. <u>직업전환훈련 및 직업 알선</u> 2. <u>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에 대한 고용 추천</u> 3. <u>주택지구 안의 주민으로 구</u>

<u><신 설></u>	<u>성된 법인 또는 단체(이하 이</u> <u>조에서 “주민생계조합”이라</u> <u>한다)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</u> <u>지원</u> <u>4. 주거시설 및 생활안정 지원</u> <u>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</u> <u>책의 범위·대상 및 같은 항</u> <u>제3호에 따른 주민생계조합의</u> <u>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</u> <u>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